

15. 보험자 대위 (수능 완성 p.226)

단락 분석

(1단락)

①손해 보험은 보험자와 보험 계약자가 우연한 사고(보험 사고)로 인해 목적물에 발생할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 보험자가 보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보험이다. ②손해 보험은 보험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 지 이익을 얻는 수단은 아니다. ③따라서 피보험자가 보상을 받을 때에는 실제 손해 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이득 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④그런데 보험자가 보험 금액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별개의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이득을 취할 수도 있다. ⑤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법에서는 일정 요건이 갖추어지면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보험자 대위*'라고 한다.

*대위: 다른 사람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하여 그가 가진 권리를 얻거나 행사하는 일.

- ① 이번 지문도 꼭 먼저 풀어본 다음 같이 읽어보자. 그래야 학습하는 의미가 더 커지니까! **손해 보험**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어. 보험자와 보험 계약자가 사고로 인해 목적물에 발생할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 보험자가 보상할 것을 약정(약속으로 정함)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보험이래. 자, 시작부터 **보험자,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라는 용어가 나왔어. 이런 지문 많이 봤지? 이럴 때는 바로 **구체적인 예시**를 떠올리면서 읽으면 도중에 헤매지 않고 계속 이해하면서 문제까지 풀 확률이 매우 높아져. 각자 머릿속으로 예시를 그려보자. 나는 보통 가족들이나 짱구로 예시를 만들어가며 읽는 편이야. **'짱구 = 보험 계약자, 짱아 = 피보험자, 훈이 = 보험자'**로 설정해서 이해하자. 조금 유치해도 이해하기 쉬우니까 참고 읽어줘.. 짱구가 여동생 짱아에게 **자동차**를 사주면서 보험자인 훈이와 자동차 손해 보험 계약도 진행을 한 거야. 계약을 맺으면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지? 이제 짱구는 매달 보험자인 훈이에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훈이는 짱아 자동차가 사고가 나서 손해가 발생할 때 피해 금액을 보상해줘야 해. 금액을 보상 받는 사람은 피보험자인 짱아!
- ② 손해 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입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지 이익을 얻는 수단은 아니래. 보험으로 짱구나 짱아가 이익을 얻으면 안된다는 거겠지?
- ③ 따라서 피보험자인 짱아가 자동차 사고가 나서 피해금 보상을 받을 때, 손해 이상의 금액을 받을 수는 없다는 **'이득 금지의 원칙'**을 소개하고 있어.
- ④ 그런데! 훈이가 자동차 사고가 난 짱아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는데도 짱아가 별개의 권리를 갖게 되는 경우 피보험자인 짱아가 별개의 권리를 행사해서 이득을 취할 수도 있나봐. 그러면 이득 금지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겠지?
- ⑤ 그래서 상법에서는 일정 요건(조건)이 충족되면 보험자인 훈이는 피보험자인 **짱아가 가진 '별개의 권리'를 대신 취득**할 수 있는데, 이를 **보험자 대위**라고 한대. 그럼 짱아 대신 훈이가 권리를 행사해서 이득을 가져갈 수 있겠네!

(2단락)

①보험자 대위는 법적으로 당사자 간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성립되는 양도 행위가 아니며, 대위의 요건이 충족되면 피보험자의 의사 표시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성립되는 것이다. ②보험자 대위가 성립되면 피보험자가 가진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보험자에게 이전된다. ③보험자 대위가 성립되는 요건에 대해서는 상법 제681조와 제68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잔존물 대위'와 '청구권 대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① 보험자 대위는 의사 표시가 필요한 양도 행위가 아니라서, **자동으로 성립**된대. 짱아가 자기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권리를 훈이에게 주기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요건(조건)이 성립하면 자동으로 훈이에게 짱아가 가진 권리가 넘어간다는 거지. 짱아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미 받았으니까!
- ② 보험자 대위가 성립되면 피보험자인 짱아가 가진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보험자인 훈이에게 이전(옮김)된대.
- ③ 그럼 이제 보험자 대위가 성립하는 조건을 알려 줘야겠지? **보험자 대위 성립 조건**이 **상법**에 규정되어 있대. 앞으로 **'잔존물 대위'**와 **'청구권 대위'**로 나누어 각각의 성립 요건에 대해 설명할 건가봐.

(3단락)

①잔존물 대위에 대해 상법 제681조에서는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 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목적의 전부가 멸실되었다는 것은 계약 체결 당시의 목적물이 지닌 형태나 기능이 없어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③보험 금액을 전부 지급했다는 것은 계약한 금액을 전부 지급했다는 것이다. ④예를 들어 보험 가액* 2천만 원인 자동차가 화재로 전소되어 보험자가 2천만 원의 보험 금액을 지급했다면, 잔존물 전체에 대한 권리는 보험자에게 이전된다. ⑤계약 시 보험 가액의 일부만 보험에 붙인 경우라면 보험자는 보험 가액에 대한 보험에 붙인 금액의 비율, 즉 **부보 비율**만큼의 권리를 얻게 된다. ⑥만약 보험 가액 2천만 원에 1천만 원만 보험에 붙였다면 보험자는 잔존물의 1/2에 대해 권리를 가지게 된다. ⑦이러한 규정을 둔 이유는 잔존물에 고철과 같은 경제적 가치가 있다면 피보험자는 이를 처분하여서도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⑧보험자가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얻게 되면 폐기물 처리와 같은 부수적 의무도 부담하게 된다. ⑨그런데 잔존물의 경제적 가치가 폐기물 처리 비용보다 작다면 대위권의 행사가 보험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 ⑩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자는 약관에 '보험자가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잔존물은 보험자의 소유가 된다.'와 같은 대위권 포기 및 관련된 조항을 넣기도 한다.

*보험 가액: 손해 보험에서 보험에 붙일 수 있는 재산의 평가액.

- ① 잔존물 대위부터 설명하고 있어.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 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상법 제681조**에 규정되어 있다.(법 규정은 항상 보기 좋게 체크해야 문제풀 때 수월~)
- ② 보험 목적의 전부가 **멸실(소멸, 소실)**되었다는 것은 짱구와 훈이가 계약을 맺을 당시의 짱아 **자동차**가 그 형태가 기능이 없어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③ 보험 금액을 전부 지급했다는 것은 훈이가 보험금을 짱아에게 모두 지급했다는 뜻이고.
- ④ 예시를 들어주고 있어. 짱아 자동차의 **보험 가액이 2천만원**인 거야. 그런데 화재가 발생해서 짱아 **자동차가 불타**버린 거지. 훈이는 울면서 2천만 원을 짱아에게 줬고, 불타고 남은 짱아 **자동차(잔존물)에 대한 권리는 이제 훈이**가 갖는데. 쓸만한 부품이라도 팔아야겠네..
- ⑤ 이번엔 짱구가 훈이와 계약할 때 보험에 붙일 수 있는 최대 가격인 보험 가액 2천만 원에 **천만 원만 보험에 붙여 계약**한 거야. 보험금을 작게 설정하면 매달 내는 보험료가 줄어들테니까 그랬으려나? 여튼 이런 경우 훈이는 보험 가액 2천만 원에 대한 보험에 붙인 금액의 비율, 즉 **부보 비율**만큼의 권리를 얻게 된다.
- ⑥ 더 풀어서 설명하면 아까처럼 보험 가액 2천만 원짜리 짱아 자동차가 불타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훈이는 짱아에게 **보험금 천만 원을 지급**하고 불타고 남은 자동차에 대해 **1/2(부보 비율)만큼의 권리**를 가진대.
- ⑦ 불타고 남은 차도 고철로 팔면 돈이 되니 피보험자인 **짱아가 차를 고철로 팔면** 훈이에게 보험금도 받고 추가로 돈도 더 버는 셈이니까 아까 제시했던 **'이익 금지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겠지?
- ⑧ 보험자인 훈이가 불탄 자동차에 대한 권리를 얻게 되면 동시에 그 **자동차를 폐기해야 하는 부수적 의무**도 부담해야 한대.
- ⑨ 그런데! 불타고 남은 차에서 고철을 떼어내 번 돈이 자동차 폐차시킬 때 드는 돈보다(대형 쓰레기는 돈내고 버려야 해!) 적다면 훈이가 불탄 자동차를 가져가는 게 **오히려 억울한 상황**이 되지.
- ⑩ 이런 때를 대비해 훈이는 짱구와 처음 보험 계약을 맺을 때 '훈이가 잔존물을 취득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할 경우에만 잔존물은 훈이 꺼'라고 **대위권 포기 및 관련된 조항**을 넣기도 한대. 훈이가 폐차 비용이 고철 판매비용보다 더 커서 불탄 자동차를 취득하겠다고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훈이는 대위권(짱아가 가지고 있던 자동차에 대한 권리를 대신 가져가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거지! 이렇게 예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면서 읽으니까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지?

(4단락)

① 청구권 대위에 대해 상법 제682조에서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제3자로 인해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는 제3자에게 손해 배상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 계약을 근거로 보험 금액을 청구할 수도 있다. ③제3자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권과 보험 금액 청구권은 별개의 것이므로 두 가지 청구권을 모두 행사 할 경우 피보험자는 이득을 취할 수 있다. ④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권리를 가지도록 한 것이 청구권 대위이다. ⑤청구권 대위는 보험자가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청구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목적물의 전부가 멸실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손해를 입는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⑥청구권 대위의 요건이 되는 ‘제3자’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보험자,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를 제외한 사람이 될 수 있으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도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가 아니라면 제3자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 ① 이번에는 보험자 대위 중 두 번째인 **청구권 대위**의 성립 요건에 대해 소개하고 있어.
- ② 제3자인 **철수**가 음주 운전을 하던 중 주차장에 있던 **짱아**의 자동차를 박아버린 거야. 그러면 짱아는 철수에게 자동차가 망가져서 생긴 손해(수리 비용 등)를 배상하라고 **손해 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동시에 짱구와 훈이가 맺은 보험 계약을 근거로 훈이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도 있어.
- ③ 철수에게 요구하는 손해 배상 청구권과 훈이에게 요구하는 보험 금액 청구권은 별개이기 때문에 짱아가 두 가지 청구권을 모두 행사하면 이득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득 금지의 원칙' 위반!**
- ④ 그래서 보험자인 훈이가 피보험자인 짱아에게 지급한 보험금 한도에서 제3자인 철수에 대한 권리를 대신 가지도록 한 게 바로 **청구권 대위!**
- ⑤ 훈이가 짱아에게 준 **보험금 한도 내에서 철수에게 손해 배상을 대신 청구**할 수 있는 거래. 그래서 철수가 짱아 자동차를 완전히 망가뜨렸을 때 뿐만 아니라 조금 손해를 입혔을 때도 훈이가 철수에게 손해 배상을 짱아 대신 청구할 수 있다.
- ⑥ **제3자의 범위**에 대해 알려주고 있어. 보험자인 훈이, 보험 계약자인 짱구, 피보험자인 짱아를 제외한 사람이 될 수 있으나, 짱아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예를 들면 짱구 아빠도 제3자에서 제외된다. 짱구 아빠가 실수로 짱아 자동차를 망가뜨렸을 경우 훈이가 짱아에게 보험금을 준 다음, 사고를 낸 사람인 짱구 아빠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가. 짱구가 짱아에게 생길 혹시 모를 손해를 방지하려고 훈이와 보험 계약을 맺었는데, 결국 생계를 같이 하는 짱구 아빠가 손해 배상금을 훈이에게 준다면 **보험을 든 이유가 무색**해지는 거잖아. 대신 짱구 아빠가 보험금을 목적으로 했다는 등의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에는 훈이가 짱구 아빠에게 손해 배상 청구 가능!

(5단락)

①보험자가 청구권 대위를 통해 제3자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권을 얻었으나 제3자가 손해를 완전히 배상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②예를 들어 보험 가액 1억 원의 건물에 5천만 원만 보험에 붙였는데, 제3자의 과실로 건물이 전소되었다고 하자. ③보험자는 5천만 원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고 제3자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권을 얻게 된다. ④만약 제3자의 배상 능력이 6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면, 4천만 원의 손해는 메워지지 않는다. ⑤이 경우 보험자가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 및 피보험자와의 분배에 대해서는 세 가지 학설이 대립된다.

- ① 사고를 낸 제3자가 **손해를 배상할 능력이 없는 경우** 어떻게 될지 알려주고 있어.
- ② 이번엔 살짝 다른 상황으로 봐야겠네. 짱구네 유치원 원장님이 보험 가액 1억원 유치원 건물에 5천만 원만 보험에 붙여 훈이와 보험 계약을 맺은 거야. 그런데 제3자인 짱구의 과실로 불이 나서 유치원이 전소(모조리 불타버림)된 거지.
- ③ 그럼 일단 보험자인 훈이가 피보험자인 짱구네 유치원 원장님에게 **보험금 5천만 원**을 줘야겠지? 그리고 짱구에게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원장님 대신 행사**할 수 있게 돼.(청구권 대위) 잠깐! 유치원 건물은 1억이었지? 그럼 **원장님도 짱구에게 5천 만원을 손해 배상 청구**할 권리가 있어! 청구권이 둘로 쪼개진 거지!
- ④ 그런데 짱구는 **6천만 원밖에 없는 거야**. 훈이나 원장님 둘 중 한 명 혹은 둘 모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네.
- ⑤ 이 경우에 보험자인 훈이가 제3자인 짱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과 원장님이 짱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해 **세 가지 학설이 대립**된다. 이제 하나씩 알려주겠지?

(6단락)

① '절대설'은 보험자가 상법의 조항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 것으로, 보험자는 지급 금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적으로 배정을 받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만 피보험자에게 주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② 위의 예에 적용해 보면 보험자는 제3자로부터 우선적으로 5천만 원을 받고, 나머지 천만 원은 피보험자가 받게 된다. ③ '상대설'은 제3자의 배상액을 부보 비율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④ 위의 예에서 부보 비율이 1/2이므로, 보험자가 1/2인 3천만 원을, 피보험자가 나머지 3천만 원을 나누어 가지게 된다. ⑤ '차액설'은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우선적으로 손해를 배상받고 나머지가 있으면 보험자가 이를 대위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⑥ 위의 예에서 피보험자는 보험 금액과 손해 배상 청구를 통해 손해액의 전부인 1억 원을 받을 수 있다. ⑦ 보험자는 제3자에게 남은 천만 원에 대해 대위를 통해 청구를 할 수 있다. ⑧ 세 학설 중 차액설이 통설로 인정받고 있는데, 보험의 목적상 이득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피보험자의 손해 보전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 ① 첫 번째, **절대설**. 아까 4단락에서 제시한 상법 제682조를 다시 보자.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를 문자 그대로 적용한다.
- ② 이 경우 훈이는 원장님에게 준 보험금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우선적으로 짱구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짱구가 가진 돈 **6천만 원 중 5천만 원은 훈이가 가져가고 남은 천만 원은 원장님**이 받게 되네. 이러면 보험자인 훈이에게 굉장히 유리하고 원장님은 기분이 많이 안 좋을 거야. 왜 그럴까? 유치원이 손해를 입으면 훈이가 그 손해를 보상하는 대신 원장님은 평소에 훈이에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니까! 원장님은 이미 꼬박꼬박 훈이에게 보험료를 냈는데, 훈이가 보험금을 원장님에게 준 대신 짱구에게 5천만 원을 받아갔으니 결국 훈이는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고 **보험료만 받은 셈**이잖아. 두목님이 억울할만 하겠지?
- ③ 두 번째, **상대설**. 배상액을 **부보 비율**에 따라 나눈다. 부보 비율은 '보험에 붙인 금액/보험 가액' 이라고 3단락에서 제시했었어. 지문에 나오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비율은 모두 항상 체크해야 해!
- ④ 원장님은 유치원 건물의 보험 가액 1억 중 절반인 5천만 원만 보험에 붙여 훈이와 계약했으니 부보 비율은 1/2. 그러면 짱구가 배상할 수 있는 금액 **6천만 원을 원장님과 훈이가 반씩 나눠서** 손해 배상 받을 수 있는 거지.
- ⑤ 세 번째, **차액설**. 피보험자가 우선적으로 배상 받고 남은 금액을 보험자가 대위할 수 있대.
- ⑥ 그렇게 되면 피보험자인 짱구네 유치원 원장님은 훈이로부터 보험금 5천만 원을 보상받고 짱구로부터도 5천만 원을 손해 배상 받을 수 있으니, 짱구로 인해 생긴 **1억의 피해를 모두 보전**할 수 있겠어.
- ⑦ 보험자인 훈이는 짱구에게 남은 **천만 원에 대해 손해 배상 청구권을 대위(대신 행사함)**할 수 있고.
- ⑧ 차액설이 **통설(통용되는 학설)로 인정**받고 있다. 왜냐면 이득 금지 원칙만 지켜진다면, 피보험자인 원장님의 **손해 보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 원장님이 피해를 본 상황이고, 또 피해를 보전하려고 평소 훈이에게 보험료를 납부해왔던 거니까! 이제 끝!

오늘 지문도 읽고 문제풀려면 꽤 고생했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예시를 적용해가면서 읽으니까 그래도 한결 쉽게 이해되지? 나는 시간재고 문제푸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지문에 보험자, 피보험자, 채권자, 채무자, 증여자, 상속인, 피상속인 등등 스트레스 유발하는 단어가 나오면 예시를 만들어가면서 읽고 문제를 푸는 편이야. 참고하길 바라. 오늘이 드디어 사회, 법 연계 마지막 지문이야!(유류분권은 9평에 출제되어 제외했어.) 그동안 부족한 해설 읽느라 고생 많았고, 다른 지문이나 문제도 많이 질문하고, 수능날 제일 높은 성적을 받아내자!